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
- 2004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법, 공무원노조법, 종합부동산세법,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,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
- 재난안전관리인력, 공무원노조전담인력, 개별주택가격평가전담인력, 과거사 피해자의 신고접수 등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

□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

- 재난안전관리인력 9명, 공무원노조전담인력 2명,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인력 4명,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전담인력 1명 등 총 16명의 인원을 증원하고자 본 조례 제2조 지방공무원의 총수

1,275명을 1,291명으로, 집행기관의 정원 1,250명을 1,266명으로 변경하며

- 자치조직권 강화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심의기능을 강화하고자 정원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별표1로 신설하는 것입니다.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와 공무원노조 활동대응, 개별주택가격평가, 동학혁명및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2004년에 제정된 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소요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소요인력의 책정은 재난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인력은 2004. 12. 행정자치부의 “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”에 의하여, 공무원단체 지원 전담 인력은 2004. 11. 행정자치부의 “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전담기구-인력 보강지침”에 의하여, 개별주택가격 평가 인력은 2005. 2 행정자치부의 “지자체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-정원보강지침”에 의하여, 동학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 조사인력은 2005. 2. 행정자치부의 “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관련 지자체 기구-정원보강지침에 의한 것으로 적정한 인력책정으로 사료되며

○ 재난관리인력은 2005. 1. 25, 공무원단체지원 인력은 2004. 11. 20. 서울특별시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으며, 개별주택가격평가인력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인력은 2005. 2. 7 서울특별시에 정원승인이 요청된 바 있으며 승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○ 정원의 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비용소요추계서와 같이 증원되는 직급의 1호봉을 기준으로 328,565천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,

인건비 확보 가능성을 살펴보면 2004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인건비 예산 54,435,237천원중 50,652,472천원을 집행하고 3,782,765천원이 불용되었는 바, 불용된 원인은 30~40명으로 추정되는 결원에 있습니다. 2005년도의 경우도 예년의 경우를 볼때 30~40명의 결원에 예상되므로 예산의 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제3조에서 별표1로 「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」를 두었는 바 이는 인력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을 자율억제하려는 취지이므로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.

다만,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구의회사무국의 경우 구의회의 기능이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종전의 정원대로 책정하였으므로 총계 25명을 27명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3. 7

보고자 : 김찬재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·현원 현황

()안은 현원

2005.2.23일 현재

	총계	구본청	구의회사무국	보건소	동
총 계	1291 (1,258)	962 (837)	25 (28)	92 (91)	212 (302)
정무직 계	1 (1)	1 (1)			
구청장	1 (1)	1 (1)			
일반직 계	935 (900)	632 (595)	12 (15)	79 (77)	212 (213)
3급	1 (1)	1 (1)			
4급	7 (7)	5 (5)	1 (1)	1 (1)	
5급	58 (58)	24 (24)	2 (2)	10 (10)	22 (22)
6급	172 (162)	134 (120)	2 (4)	14 (13)	22 (25)
7급	269 (416)	196 (257)	3 (7)	26 (45)	44 (107)
8급	309 (208)	203 (157)	2 (1)	23 (6)	81 (44)
9급	119 (48)	69 (31)	2 (0)	5 (2)	43 (15)
별정직 계	12 (11)	6 (7)	6 (4)		
6급상당	1 (2)	1 (2)			
7급상당	7 (6)	5 (5)	2 (1)		
8급상당	3 (2)		3 (2)		
9급상당	1 (1)		1 (1)		
기능직 계	343 (346)	323 (234)	7 (9)	13 (14)	(89)
기능6급	5 (5)	5 (5)			
기능7급	12 (14)	12 (12)			(2)
기능8급	35 (120)	33 (85)	(2)	2 (5)	(28)
기능9급	86 (141)	80 (90)	3 (6)	3 (9)	(36)
기능10급	205 (66)	193 (42)	4 (1)	8 (0)	(23)

자치구 구의회 정·현원 현황

()안은 현원

2005.2.23일 현재

구별	정원	6급 이상 관리자급 정원				비고
		계	4급	5급	6급	
중구	26 (25)	6 (6)	1 (1)	2 (2)	3 (3)	
강남구	27 (27)	7 (7)	1 (1)	2 (2)	4 (4)	
용산구	22 (22)	5 (6)	1 (1)	2 (2)	2 (3)	
성동구	24 (24)	6 (6)	1 (1)	2 (2)	3 (3)	
종로구	24 (26)	5 (6)	1 (1)	2 (2)	2 (3)	
광진	23 (21)	6 (8)	1 (1)	2 (2)	3 (5)	
동대문구	22 (24)	6 (6)	1 (1)	2 (2)	3 (3)	
중랑구	25 (25)	7 (6)	1 (1)	2 (2)	4 (3)	
성북구	26 (26)	7 (6)	1 (1)	2 (1)	4 (4)	
강북구	24 (27)	6 (6)	1 (1)	2 (2)	3 (3)	
도봉구	26 (24)	6 (6)	1 (1)	2 (2)	3 (3)	
노원구	25 (24)	6 (6)	1 (1)	2 (2)	3 (3)	
은평구	27 (26)	6 (6)	1 (1)	2 (2)	3 (3)	
서대문구	27 (28)	6 (7)	1 (1)	2 (2)	3 (4)	
마포구	26 (27)	6 (7)	1 (1)	2 (2)	3 (4)	
양천구	26 (27)	6 (6)	1 (1)	2 (2)	3 (3)	
강서구	22 (28)	6 (7)	1 (1)	2 (2)	3 (4)	
구로구	23 (25)	7 (6)	1 (1)	2 (2)	4 (3)	
금천구	23 (23)	6 (7)		2 (2)	4 (5)	
동작구	25 (26)	6 (6)	1 (1)	2 (2)	3 (3)	
관악구	27 (27)	6 (6)	1 (1)	2 (2)	3 (3)	
서초구	24 (22)	6 (6)	1 (1)	2 (2)	3 (3)	
송파구	25 (29)	6 (9)	1 (1)	2 (2)	3 (6)	
강동구	28 (30)	6 (6)	1 (1)	2 (2)	3 (3)	
영등포구	25 (28)	5 (7)	1 (1)	2 (2)	2 (4)	

※ 정원분포 : 22명-3개구, 23명-3개구, 24명-4개구, 25명-5개구, 26명-5개구, 27명-4개구, 28명-1개구

인력증원에 따른 소요예산

(단위 : 원)

구분	산출근거	산출금액
	총 계	493,724,261
기본급	9급 1,019,400원×1.024×9월×3명	28,184,371
	8급 1,264,800원×1.024×9월×7명	81,594,778
	7급 1,604,700원×1.024×9월×5명	73,944,576
	5급 2,209,300원×1.024×9월×1명	20,360,909
	소 계	204,084,634
기말수당	9급 1,019,400원×0.5%×4회×3명	18,349,200
	8급 1,264,800원×0.5%×4회×7명	17,707,200
	7급 1,604,700원×0.5%×4회×5명	16,047,000
	5급 2,209,300원×0.5%×4회×1명	4,418,600
	소 계	56,522,000
정근수당	9급 1,019,400원×0.5%×2회×3명	3,058,200
	8급 1,264,800원×0.5%×2회×7명	8,853,600
	7급 1,604,700원×0.5%×2회×5명	8,023,500
	5급 2,209,300원×0.5%×2회×1명	2,209,300
	소 계	22,144,600
초과근무수당	9급 5,204원×55시간×9월×3명	7,727,940
	8급 5,802원×55시간×9월×7명	20,103,930
	7급 6,475원×55시간×9월×5명	16,025,625
	5급 8,506원×55시간×9월×1명	4,210,470
	소 계	48,067,965
정액급식비	130,000원×9월×16명	18,720,000
	소 계	18,720,000
교통보조비	9급 120,000원×9월×3명	3,240,000
	8급 120,000원×9월×7명	7,560,000
	7급 130,000원×9월×5명	5,850,000
	5급 140,000원×9월×1명	1,260,000
	소 계	17,910,000

(단위 : 원)

구 분	산 출 근 거	산출금액
영절휴가비	9급 1,019,400원×0.75%×2회×3명	4,587,300
	8급 1,264,800원×0.75%×2회×7명	13,280,400
	7급 1,604,700원×0.75%×2회×5명	12,035,250
	5급 2,209,300원×0.75%×2회×1명	3,313,950
	소 계	33,216,900
가계지원비	9급 1,019,400원×0.5%×5회×3명	7,645,500
	8급 1,264,800원×0.5%×5회×7명	22,134,000
	7급 1,604,700원×0.5%×5회×5명	20,058,750
	5급 2,209,300원×0.5%×5회×1명	5,523,250
	소 계	55,361,500
연가보상금	204,084,634원×1/12×1/24×20일×0.85	12,046,662
	소 계	12,046,662
직책급 업무추진비	100,000원×9월×1명	900,000
	소 계	900,000
직급보조비	9급 105,000원×9월×3명	2,835,000
	8급 105,000원×9월×7명	6,615,000
	7급 140,000원×9월×5명	6,300,000
	5급 250,000원×9월×1명	2,250,000
	소 계	18,000,000
특정업무추진비	9급 50,000원×9월×3명	1,350,000
	8급 50,000원×9월×7명	3,150,000
	7급 50,000원×9월×5명	2,250,000
	소 계	6,750,000